

평창군 주민안전보험 가입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415
----------	-----

제출년월일 : 2018. 01.

제 출 자 : 평 창 군 수

1. 제안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발적 사고, 재난으로부터 안전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군민들의 생활 안정과 보험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가입대상에 관한 규정(안 제3조)

- 평창군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군민(외국인 포함)

나.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에 관한 규정(안 제4조)

- 예산의 범위에서 재난 유형별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을 따로 정할 수 있음

다. 피해신고 및 조사에 관한 규정(안 제6조)

- 피해신고는 피해자가 직접 보험기관에 접수하며,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이 접수가능
- 보험기관이 피해조사를 시행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하며, 증빙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신속히 제출

라. 보험금액 산정에 관한 규정(안 제7조)

- 피해에 대한 보상금액은 보험기관이 보험증권과 약관에 따라 산정
- 보험기관은 피해조사 및 보상금액산정 등에 관한 업무에 대하여 전문가에게 위탁가능

마. 보상제외에 관한 규정(안 제8조)

- 대상자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진출한 경우 등

바. 보험금 신청에 관한 규정(안 제9조)

- 보험에 규정된 범위에서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 및 법정상속인은 청구서 및 구비서류를 갖추어 보험금 신청

사. 보험금 지급에 관한 규정(안 제10조)

- 보험기관은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직접 지급하되,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법정 상속인에게 지급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별첨

나. 예산조치 : 2018년 예산에 22,000천원 반영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입법예고(2017.11.17.~12.7.) 결과, 제출의견 없음
- 2) 규제심사 : 비규제
- 3)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 4) 성별영향분석평가 : 개선의견(가입대상에 외국인 포함) 반영

평창군 군민안전보험 가입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발적 사고, 재난으로부터 인적 피해문제 등에 대응하기 위해 평창군민들의 생활안정과 보험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민안전보험” (이하 “보험”이라 한다)이란 평창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평창군이 보험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
2. “보험기관”이란 보험 지원과 관련하여 평창군과 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 또는 공제회를 말한다.
3.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서 규정하는 자연재난, 사회재난을 말한다.

제3조(가입대상) 평창군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군민(군 관내에 주소를 가진 외국인 포함)을 피보험자로 한다.

제4조(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난 유형별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조(보험료 납입 방법) 보험료는 평창군이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기관에 직접 납입한다.

제6조(피해신고 및 조사) ① 피해신고는 피해자가 직접 보험기관에 접수한다. 다만,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이 접수할 수 있다.
② 보험기관이 피해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는 경우 피해자는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하며, 피해에 관한 증빙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신속히 제출해야 한다.

제7조(보험금액산정) 피해에 대한 보상금액은 보험기관이 보험증권과 약관에 따라 산정하며, 보험기관은 피해조사 및 보험금액산정 등에 관한 업무에 대하여 전문가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8조(보상제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상에서 제외된다.

1. 대상자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2.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보험가입을 제한하는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원을 받은 경우

제9조(보험금 신청) 보험에 규정된 범위에서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 및 법정상속인은 청구서 및 구비서류를 갖추어 보험금을 신청 할 수 있다.

제10조(보험금 지급) 보험기관은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직접 지급한다. 다만,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법정 상속인에게 지급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발췌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자연재난: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낙뢰, 가뭄, 지진, 황사(黃砂),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소행성·유성체 등 자연우주물체의 추락·충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나. 사회재난: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한다)·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에너지·통신·교통·금융·의료·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복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비용발생 요인 : 군민안전보험 가입 보험료
- 관련조문 : 제3조(가입대상) 및 제4조(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

2. 미첨부 근거 규정

- 「평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 중 제1호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군민안전보험 가입 보험료 추계 결과 연평균 5천만원 미만으로
비용추계서 미첨부

4. 작성자

작성자	평창군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연락처	(033) 330 -2406